

답 변 서

사 건 2026카합20328 소스코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알파피플
채무자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1. 채권자의 주장 및 채무자의 답변 요지

채권자는, 채무자가 2025년 하반기부터 외주용역계약(소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른 개발 업무를 현저히 지연하던 중, 2026. 1. 5.경 채무자의 투자 유치를 이유로 부당한 계약 변경을 요구하였고, 서비스 런칭 일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소스코드 등 소유권이전을 거부하면서 2026. 1. 13.경 채권자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도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채무자는 2025. 5. 12.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약 8개월 동안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아래에서 설명드릴 발주자인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는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기각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채권자는 인플루언서와 전 세계 팬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플랫폼)을 마련하고 사용자(소비자)의 유료 아이템 결제, 굿즈 구매, 제휴 광고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합니다) 수익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에 관한 초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5. 2.경 채무자와 이 사건 앱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당시 채권자는 사내이사 1명뿐인 1인 회사인 상태였으나 회사의 가치(밸류)가 30억 정도되어 5%인 1억 5,000만원을 지인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K-POP, K-FOOD 등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앱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고, 2025. 5. 12. 채권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앱 출시 및 운영을 위한 백엔드¹⁾ 및 백오피스²⁾를 개발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계약은 외주 용역계약이고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사업자 겸 발주자로서 이 사건 사업 기획,

1) 백엔드는 앱 사용자(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서버 및 데이터처리 영역을 말하며, 반대로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사용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2) 백오피스는 앱 제공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관리자용 업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사업자금 조달, 인력 운영, 광고 홍보 등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고 프론트엔드 영역인 모바일 앱 개발, 모바일 앱 디자인을 담당하며,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사건 앱 출시까지 주된 지출처인 인건비 등 사업자금을 확보한 상태이고 채권자의 사업 역량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앱 출시일로부터 만 4년 동안만 순매출액의 5%를 용역 보수로 지급받되, 이 사건 앱 출시일까지 무보수로 백엔드 및 백오피스 개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보통의 용역 계약과 달리 이 사건 앱 출시까지 채무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향후 이 사건 앱 출시 이후 매출액의 5%를 4년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채권자 입장으로는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인 채무자 대표이사들이 사건 앱 출시까지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특히 앱 출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매출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앱 출시뿐만 아니라 만약 출시 이후에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채권자의 고유자금이 전혀 지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사업자 겸 발주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채무자는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오로지 채권자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 해제(종료)

가. 채권자의 업무 해태

채권자는 사업자 겸 발주자로서 이 사건 앱 개발을 위한 필수적 내용인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수익을 낼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 모델, 결제 및 정산 정책, 인플루언서 또는 인플루언서 소속 회사와의 수익분배 정책 등 기본적인 사업 구조 및 운영

을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앱 개발에 반영되도록 채무자에게 지시하여야 하고, 이에 채무자는 이 사건 앱이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약 8개월이 경과한 2026. 1. 6.까지도 이 사건 사업의 핵심 구조인 사업 모델, 인플루언서 또는 인플루언서 소속 회사, 사용자(소비자)와의 수익분배 방식 정책, 즉 i) 환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 시점으로 적용할 지, ii) 결제 채널(애플, 안드로이드, 웹 등)별 수수료율 차이에 따른 가격 정책, iii) 사용자(소비자)의 멤버십 정책, iii) 비활동 인플루언서에 대한 페널티 정책 등 이 사건 사업의 기본적 구조를 설정하지 않는 등 그 역할을 해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2025. 12. 8. 채권자의 대표자 사내이사와 통화 당시에도, “스펙이 있어야지 개발을 하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 추측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아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은데”라며, 채무자가 기본적인 사업 구조 기획 없이 채무자가 추측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일하고 있음을 말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향후 사업 구조가 변경될 경우 채무자로서는 일을 두 번, 세 번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업무 해태에 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C-02 녹음파일).

[2025. 12. 8. 통화 내용]

■ 이재철(채무자) :

아니요. 필요한 거는 사실 예전부터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냥 압박을 안 드린 거지. 이게 필요한지는. 아니 스펙이 있어야지 개발을 하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 추측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아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재호 님이 비즈니스 영업하시느라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게 딜레이 되기 전까지는 예전에 여름에 이럴 때는 비즈니스 영업하시니까 그래 스펙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영업도 어느 정도는 중단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좀 이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저도 이게 개발하는데 계속 이게 머리가 양쪽으로 분해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구현 기술 자체도 어려운데 스펙도 제가 또 상상해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인지 부하가 걸리는 일이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필요한지는 엄청 예전이죠. 예

■ 조재현(채권자) :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 이재철(채무자) :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닌 게 제가 말씀드린 지 오래됐는데. 예를 들면요. 저희 제가 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가격에 그 세 가지 표를 드리고 하나 그중에 하나 고르셔서 디테일하게 첫 장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렸을 때도 제가 기다리다가 사실 포기하고 얘기 안 한 거거든요. 계속 안 하시는 거 제가 알아가지고, 이제

■ 조재현(채권자) :

아니 아니 아니 그

■ 이재철(채무자) :

제가 거기에 어디냐? 제가 베이스캠프에 투두 리스트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올리면 다시 얘기할 필요 없도록 올리는 거잖아요. 베이스캠프에 올려놓은 지가 옛날입니다. 그런 거. 가격. 이거 결정해 달라고.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이러한 채무자의 요청에 대하여, 채권자는 2025. 12. 8. ChatGPT 등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할 사업 구조에 관하여 매우 추상적인 답변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앱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획 및 용역 지시를 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기존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사업 구조를 추측하며 개발함으로써

사실상 채무자가 이 사건 사업 구조를 기획하고 개발까지 하는 상태였습니다(채권자가 보낸 구독료 결제 방식 그림).

나. 채권자의 투자금 유치 관련 과장 또는 허위에 따른 신뢰 상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25. 4. 17. 통화에서도, 채권자는 자신의 회사 밸류(가치)가 30억원 정도 되고 5%인 1억 5,000만원을 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에 관하여 재차 확인해주었습니다(C-41 녹음파일 아래 대화 내용만 편집 필요).

[2025. 4. 17. 통화 내용]

■ 이재철(채무자) :

재현님 지금 지인분에게 3억 투자 받으셨다고 했죠? 1억 5천이었나?

■ 조재현(알파피플) :

1억 5천

■ 이재철(채무자) :

1억 5천, 1억 5천, 30억에 5%였지. 1억 5천.

■ 조재현(알파피플) :

네 맞아요.

■ 이재철(채무자) :

그걸로 런칭까지는 투자 추가 투자 필요 없지 않나요? 런칭까지는.

■ 조재현(알파피플) :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 이재철(채무자) :

아 투자를

벤처 기업의 가장 취약점이 초기 인건비 등 자금 사정인데 채권자가 이 사건 앱 출시까지 인건비 등 필요자금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채무자는 무보수로 업

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앱 출시 이후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채권자를 신뢰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 10. 23.자 통화에서, 채권자의 대표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지인으로부터 투자(펀딩)를 받았다는 말에서, 최초 투자자는 지인이었는데 그 이후는 부모님이 투자를 하였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C-42 녹음파일 아래 대화 내용만 편집 필요).

[2025. 10. 23. 통화 내용]

■ 이재철(채무자) :

재현님 지금 펀딩 예전에 받으셨던게 얼마예요? 이건 뭐 제가 딴하게 관여할 건 아니고

■ 조재현(알파피플) :

펀딩 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그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 이재철(채무자) :

그때 지인이라고 하셨던 게 부모님이셨어요?

■ 조재현(알파피플) :

아 지인도 있고요.

■ 이재철(채무자) :

아 그래요?

■ 조재현(알파피플) :

최초는 지인이고 그거가 소진되고 나서는 부모님한테 지금 펀딩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는 결정을 좀 해야 될 이제 상황이 온 것 같아서

다. 채권자의 사업자금 소진에 따른 이 사건 앱 출시 불능

채무자는 2025. 10. 27. 채권자와 통화에서, 채권자의 자금 부족에 따라 직원 2명 (프론트엔드 부문 1명, 디자인 1명)도 사실상 중도 이탈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만에 직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앱 출시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라. 이 사건 계약 해제 통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성의한 사업 기획안이었고, 채무자의 이 사건 계약 용역은 채무자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역할 및 채권자가 담당하기로 한 프론트엔드 모바일 앱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채권자 직원들의 이탈 및 자금 소진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무자는 2026. 1. 9. 이 사건 계약을 원만히 종료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기존 결과물에 관하여 사용권을 부여하고 부제소 합의를 통한 계약 종료를 제안하였습니다 (2026. 1. 9. 사용권 부여 합의해지 안).

그러나 채권자는 소유권은 물론 이 사건 앱 출시까지 지원 업무를 무보수로 계속해야 한다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였기에 결국 이 사건 계약 종료에 관하여 쌍방 의사는 일치하였으나 후속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 주장 내용이 부당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 채권자 주장에 대한 반박

가. 개발 지연 및 부당한 계약 변경 요구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2025년 하반기부터 업무를 현저히 지연시켜 오던 중 2026. 1. 5.경 채무자의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6월부터 주말인 토, 일요일의 절반을 일하였고 10월 추석연휴에도 일하였으며, 그리하여 전 세계 5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WakaTime³⁾ 기준 2025년 1년 동안 상위 1%에 해당할 정도로 시간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WakaTime 기준 시간은 순수히 코딩(개발) 활동에 사용된 시간만 기록되므로, 채무자가 코딩 작업 이외 이 사건 사업 기획, 회의 등 다른 업무까지 포함한다면 채무자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입니다(WakaTime **그림**).

또한 채무자가 2026. 1. 5.경 투자 유치를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미 채권자의 직원들은 중도 퇴사하였고 이 사건 앱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무자 입장으로서 이 사건 앱을 출시하더라도 사업 실패시 채무자는 한 푼의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지만, 정작 채권자는 이 사건 앱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어 제3자에게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됨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직원들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수 변경 및 소유권이 아닌 영구적 사용권으로 제안을 한 것이지, 채무자가 부당한 계약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 소스코드 등의 인질화 및 계약상 의무의 정면 부인 주장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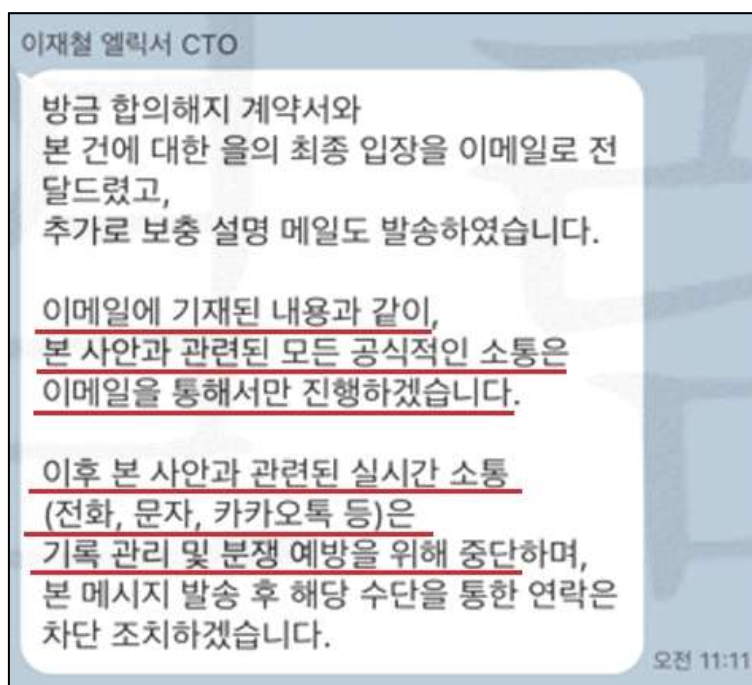
3) 개발자의 코딩(개발) 시간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시간을 기록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자는 현재까지도 채권자로부터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앱 개발 지연 및 사업 실패시 채무자 역시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채무자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앱 출시가 임박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떠한 폭언을 하였다는 것인지, 채권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 책임 전가 및 일방적인 연락 두절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권자가 사업자로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채무자가 미리 추측하여 개발까지 담당하게 되었는바 책임 전가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2026. 1. 13.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자며 카카오톡 대화를 중단하였으며(소갑 제5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그 이후 쌍방은 18건 이상의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소갑 제5호증 3쪽 - 카카오톡 마지막 대화 부분]



라. 채권자의 이행 촉구와 채무자의 악의적인 이행 거절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가 보낸 2026. 1. 16.자 공문(소갑 제4호증)은 이 사건 신청 내용으로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개발한 이 사건 용역 결과물은 채무자의 소유임은 당연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원만히 종료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영구적 사용권을 제안하였으나 이마저도 채권자가 거절하였습니다.

마. 채권자가 인용하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채권자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91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668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나25797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의 사안은 모두 보수 지급을 전제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은 무보수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것인바 사안이 다르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 사건 계약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지만, 채권자의 업무 해태, 채권자의 투자금 유치 관련 과장 또는 허위에 따른 신뢰 상실, 채권자의 사업자금 소진에 따른 이 사건 앱 출시 불능 등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채권자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명서류

1. 서울 제1호증
1. 서울 제2호증
1. 서울 제3호증

2026. 5. .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화**
담당변호사 문강석, 이상훈, 함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다) 귀중